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38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 김도읍 · 강승규 · 박성훈

구자근 • 박형수 • 신동욱

이헌승 · 인요한 · 정점식

권영진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

임(안 제7조의2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의 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기나지 아니한 사람은 기나지 아니한 사람은 기나지 아니한 사람은 보기 기가 있다면 사람은 그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기상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	현 행	개 정 안
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제7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지나지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후 3년이지나지아니한 사람 5. 「정당법」제22조에 따른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 사람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 사람를 모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 사람

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